

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수입식품등의신고업무처리에관한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1-36호(2001.6.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문서교환 방식에 의한 수입식품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신고 및 등록 업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교환방식”이라 함은 서류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화일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간에 전송 등이 되거나 출력된 전자자료를 말한다.
3. “전담사업자”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부가가치통신망중계사업자를 말한다.
4. “신고인”이라 함은 식품 등의 수입 신고서를 제출하는 실수요자를 말한다.
5. “대행자”라 함은 실수요자로부터 업무처리를 위탁받아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업무 처리 신청 및 승인) ①전자문서교환 방식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행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하며, 서울·부산·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한한다) 또는 국립검역소장(이하 “검역소장”이라 하며, 국립인천공항·부산·인천·김해검역소장을 제외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담사업자의 전자문서교환방식 중계서비스 가입승인서 사본(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 제출용) 1부.
2. 수입식품 등의 신고업무 처리 프로그램 등록증 사본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제출된 첨부서류의 진위여부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수입신고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일자 및 승인사항을 전자문서교환방식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발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식품 등의 수입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제6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 등록이 취소된 경우, 프로그램 개발자가 아닌 사용자가 등록 취소일 이전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업무

처리 승인취소) ①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식품 등의 수입신고 업무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식품 등의 수입신고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2. 등록된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식품 등의 수입신고 업무처리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사업자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식품 등의 수입신고 업무용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업무
2.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식품 등의 수입신고업무에 사용되는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모집 및 개발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업무

제6조(프로그램 등록) ①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작성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판매를 목적

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식품 등의 수입신고자료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작성기준, 작성내용, 신고 및 전송서식 등 형식요건에 충족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전담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프로그램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출서류 목록(서류 및 디스켓)
2. 사용자 설명서(서류 및 디스켓)
3. 프로그램 목록(서류 및 디스켓)
4. 사용자 설치용 프로그램(디스켓)
5. 원시 프로그램(디스켓)

②전담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식품 등의 수입신고자료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작성기준, 작성내용, 신고 및 전송서식등 형식요건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등록을 인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프로그램 변경)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등록한 자는 임의로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추가·삭제(이하 “변경”이라 한다)할 수 없다.

다만, 법령개정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요구에 의하여 전담사업자가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전담사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담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항을 확인한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은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취소 등) ①전담사업자는 프로그램등을 등록한 자가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을 변경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전담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1년간 프로그램 등록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전담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 등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처리기간의 계산)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전자문서교환방식으

로 수입식품등의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 1항에 의한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도착된 날을 민원처리 기산일로 본다.

부 칙(제1998-100호, '98. 11. 6)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01-36호, 2001. 6.26)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뒷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

